

##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제 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부설 기초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연구소는 기초과학분야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서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연구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과학 분야의 조사연구
2. 학술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연구발표회, 강습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5조 (임원)** 본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 장 1명
2. 간 사 1명
3. 운영위원 8명 내외
4. 감 사 2명

**제 6조 (위촉)** 본 연구소의 소장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간사, 운영 위원, 감사는 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09.01)

**제 7조 (임원의 임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② 간사는 연구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제 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 (연구원 총회)**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혹은 연구원의 과반수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총회의 출석과 의결정족수는 위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 ①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연구소 운영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4. 연구지발간, 연구발표회, 강연회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위원회 회의는 매학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 간접연구경비, 외부 연구비, 기부금 및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3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폐소)**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 (신설 2015.09.01)

**제15조 (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09.01)

1.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 다음해 3월말까지  
(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
2. 매 회계연도 결산서 - 다음해 3월말까지
3.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월말까지
4.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

**제16조 (준용)**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09.0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종전의 기초과학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초과학연구소 운영세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서류비치)**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연구소 규정
2. 임원 및 연구원 명부
3. 회의록
4. 회계장부, 예산서 및 결산서
5. 증빙서류철
6. 기타 중요한 서류

**제 3 조 (학과행사개최지원)** 연구소 소속 학과들이 학술정보 교류, 학술활동 진작 및 연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를 주관하여 개최할 경우에는 학술행사 개최지원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조 (논문투고 규정)**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기초과학연구 논문집’의 체계적 발간을 위하여 논문투고 및 형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술행사 개최 지원 내규

- 제 1 조(목적)** 이 내규는 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 운영세칙 제3조에 규정된 연구소 소속 학과들이 학술정보 교류, 학술활동 진작 및 연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를 주관하여 개최할 경우 경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지원대상)** 교내에서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샵 및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를 주관하는 학과로 한다.
- 제 3 조(지원내역)** ① 지원금액은 매년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학과 당 1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전국규모의 학술회의 : 100만원 이내
  2. 세미나 또는 워크샵 : 50만원
- ② 학술회의 규모는 발표자, 참가자, 소속기관 분포 또는 학술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
- ③ 전국규모 학술회의 지원규모는 교내 학술회의 개최 지원 내규에 정한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항은 소장이 결정한다.
- 제 4 조(지원기준)** 매년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대학교 기초과학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샵
  2. 분야별 특성화 콜로퀴움, 기타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임
  3. 행사 안내문(홍보물 또는 게시판)에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지원 받는 행사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제 5 조(신청시기)** 행사 개최 2주일 전에 학과장 명의로 지원신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며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조(신청서류)** 학술회의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행사개최경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행사 프로그램(발표논문 초록 포함), 기타 자료 각1부(행사 종료 후 제출가능)
- 제 7 조(정산)**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행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연구비규정에서 정한 정산서, 증빙자료(원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행사개최경비 지원신청서

행사명	국문			
	영문			
행사장소				
행사기간				
주관학과				
예상참석자수	교수	명		
	대학원생	명		
	학부생	명		
	계	명		
발표자	발표자명	소속기관	부서	직위
개최효과				
개최경비 예산서	자체부담	연구소지원 요청금액	총액	
	천원	천원	천원	
기타협조사항				
입금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p>위와 같이 행사개최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학과명    :</p> <p style="text-align: right;">담당교수        :                   (인)</p> <p style="text-align: right;">학과장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귀하</p>				

- ※ 첨부 : 개최경비예산서, 행사프로그램, 기타 자료 각 1부
-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첨 가능
- ※ 행사 개최 후 1주일 내 정산서 제출

## 행사개최경비 예산서(건본)

1.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수 입	비 고
총지출경비		
연구소 지원금		
자체 경비		
기 타		

※ 기타 지원액이 있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원기관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

2. 사용내역

(단위:천원)

항 목	집 행 예 상 액	비 고
계		

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귀하

결  재	담당	소장

## 행사개최경비 정산서

※ 연구소 지원금만 정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5만원 이상은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을 필히 첨부

### 1. 총괄표

(단위:원)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회 수 액	비 고
총지출경비					
연구소 지원금					
자체 경비					
기 타					

※ 기타 지원액이 있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원기관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

### 2. 사용내역

(단위:원)

항 목	집 행 액	비 고
계		

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귀하

결  재	담 당	소 장

## 영수증 첨부철

지출항목				
영수증	매	합계	원	책임자 : ○ ○ ○ (인)

- ※ 5만원 이상은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을 필히 첨부.
- ※ 금액이 보이도록 영수증을 붙여 주십시오(각 항목 당 5장 이내로).



## 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학술지(기초과학연구) 논문투고 규정

### 제1조(목적)

- 1.1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기초과학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과 논문 투고 및 형식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고 및 발간)

- 2.1 원고의 주요내용은 투고일 이전에 타 학술잡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2.2 원고는 기초과학 또는 그 응용분야의 논문, 보고, 해설, 속보, 초록의 형태로 학술상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2.3 투고된 연구논문 또는 초청된 논문을 원고로 한다.  
 2.4 특정 분야의 학술대회 발표논문으로 특집호를 출판할 수 있다.  
 2.5 (발간) 학술지는 매년 1회(12월 30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투고)

- 3.1 투고자격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청된 논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2 원고의 접수일자는 전자문서 또는 인쇄물이 편집간사에게 최초 도착된 날로 한다.  
 3.3 원고는 투고양식에 맞추어 작성된 HWP파일과 출력물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의 경우 원본 1매와 전자출판이 가능한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3.4 (언어) 본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한글과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양식과 체제)

- 4.1 논문의 순서는 논문제목, 저자 이름 및 주소, 초록, 색언어,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본문, 인용문헌, 표 설명 및 표, 그림(사진)설명 및 그림(사진)으로 한다.  
 4.2 논문 제목, 저자 이름, 주소가 포함된 영문요약(또는 본문이 영문일 경우 국문요약)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주소에는 약자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인용문헌)

- 5.1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학술지 이름, 권수(호수), 시작쪽수, 연도의 순서로 쓴다.  
 5.2 단행본은 저자, 책 이름(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장소, 출판년도, 인용부분을 쓴다. 권수는 진한 글씨체로 하며, 인용번호는 큰 묶음표[ ]로 표시한다.

예: [1] H. H. Park and A. H. Lee, J. Korean Phys. Soc. 17(2), 111(2002)

[2] S. J. Hallman, SuperIonics Thermodynamics, 2nd ed. (North-Holland,

Amsterdam, 1999), Vol. 1, Chap. 3, pp. 200-215.

[3] A. B. Kim, in Proceedings of the 2004 Summer Meeting of the Korea Physical Society, edited by K. N. Myung(Pusan, Korea, May 23-24, 2004), Vol. 1, pp. 10-15.

[4] C. D. Kang, Oceans Report No, CEE-R 5000, 2004.)

### 제6조(표와 그림)

- 6.1 표와 그림(사진)은 본문에 그 위치를 표시하고 번호를 기입한다.  
 6.2 그림(사진)설명의 목록은 그림(사진)과 별도로 작성한다.  
 6.3 그림(사진)은 전자출판이 가능한 파일 형태와 출력물로 제출한다. 그림(사진) 속의 문자나 숫자는 축소될 것을 고려한 크기로 기입하고, 그 번호(제목)는 그림(사진) 외부에 기입한다.

### 제7조(교정)

초고는 대표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때 원고의 개정은 할 수 없다.

### 제8조(게재료와 출판비)

- 8.1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료는 지불하지 아니하며, 초청된 논문의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별쇄본은 20부를 제공하며 추가 별쇄본은 초고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실비는 저자가 부담한다.  
 8.2 불가피하게 아트지(또는 색도인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  
 8.3 특정 분야의 특집호를 출판할 경우에 출판비를 해당 분야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판권)

- 9.1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되었을 경우, 저자들은 논문의 판권 일체를 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한다.  
 9.2 위 8.1에 따라 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재출판할 수 있다.

### 제10조(해석)

- 10.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날(2007. 02. 05)부터 유효하다.